

## < 수시 공시 >

2013.11.01.

### 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
1	신영신증법인용 MMF 제 4-26 호
2	신영신증법인용 MMF 제 4-27 호
3	신영신증 MMF 제 4-35 호

2. 정정 내용 : 자본시장 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

3. 공시 사유 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
4. 변경 시행일 : 2013년 11월 1일
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